

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안내(1/2)

당사는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2조 및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당첨자를 국토교통부와 금융결제원으로 청약제한사항 및 주택소유여부를 전산검색을 의뢰합니다.

또한 계약체결 전 제출한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를 확인하여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입주대상자에 대하여 7일간의 소명기간내 부적격사항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한 경우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7조 제8항에 따라 당첨(분리세대, 전산검색 소요시간 등으로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 및 계약취소 됨)을 취소하며, 부적격자로 전산관리되어 당첨일로부터 1년간 청약제한이 적용됩니다.

따라서, 관련법령에 의거 당첨자는 아래 제출기한까지 또는 공급계약 체결전까지 공급 및 당첨유형별 자격확인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● 제출기간 및 유의사항

제출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정당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
제출기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019.5.22(수) ~ 2019.5.25(토) 10:00 ~ 16:00까지 또는 계약체결시
제출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방배그랑자이 건본주택 -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319, 3층 (대치동, 자이갤러리) / ☎ 1833-4520
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내에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건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전 자격확인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 바랍니다. 단, 계약체결시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※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19.04.25) 이후 발행분에 한함. ※ 모든 제증명 서류는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"상세" 로 발급 ※ 예비당첨자 안내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정당 당첨자의 부적격 소명기간이 지난 후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공급대상 동호수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. - 단, 정당 당첨자의 계약여부, 부적격세대 발생 및 소명여부에 따라 일부 또는 전 주택형의 예비입주자의 공급이 없을 수 있으며, 세대별 부적격사유 및 소명사항 등에 따라 최초 예비입주자 공급 일시 및 공급불가 주택형 등은 예비당첨자에게 개별통지 예정입니다.

● 입주자 자격제한의 적용 대상

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7조 제7항에 따라 입주자 자격제한(1순위 자격제한, 재당첨제한 등)의 적용 대상은 당첨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당첨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구성원을 모두 포함합니다.

●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**공통 제출서류**

구분	필수	추가 (해당자)	해당서류	발급기준	확인 및 유의사항
필수	○		신분증	계약자	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
	○		주민등록표등본	계약자	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사유(일자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	계약자	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을 포함하여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	계약자	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“상세” 로 발급
	○	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계약자	용도 : 아파트 계약용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불가(본인만 가능)
	○		인감도장	계약자	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“생략”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계약자	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제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 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(공고일기준 최근 2년)
추가	○		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,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등을 포함하여 “상세” 로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	직계 존비속	직계존·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만 30세이상 미혼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	○		혼인관계증명서	계약자 / 직계비속	공급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	○		복무확인서	계약자	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(기타 수도권 거주자로 봄)
	○		청약통장 순위(가입)확인서		
대리 제출시	○		계약자 인감증명서	계약자	계약용외 추가로 1통 발급 받아야 함(용도 : 서류검수 위임용)
	○		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	대리인	인장 또는 서명 가능
	○		위임장	-	[건분주택 비치]

※ 모든 증명서류는 **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19.04.25) 이후 발행분에 한함.**

※ 대리인 서류는 서류검수 및 계약시 각각 준비하여야 함

예) 서류검수와 계약시 모두 대리인 참석시 : 계약자 인감증명서는 총 3통 필요

- ① 아파트 계약용 ② 서류검수 위임용 ③ 아파트계약 위임용